

『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0월 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0월 16일

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시설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사항(제4조, 제6조)

- 주차장·야영장·오토캠프장·숲속의집 사용료 (별표1)

-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예약가능(예약후 3일내 사용료 납부)

- 비수기(매년 7~8월,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)에는 시설사용료 30% 할인
- 숲속의집 및 오토캠프장의 사용자 ⇒ 주차료 면제
-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(제7조)
 - 사용예정일 당일 내지 5일전 예약 취소한 경우 ⇒ 일부 또는 전액환급
 - 휴양시설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 환급 ⇒ 30% 공제후 반환
 - 기상재해 등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⇒ 위약금 부과없음
-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에 따른 배상(제8조)
 - 사용예정일 당일 내지 5일전에 통보한 경우 ⇒ 사용료 전액 및 일부 배상
 - 예약취소·잘못 입금한 자에게 5일 이내 환불
- 입장·시설사용·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(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(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, 동법 제22조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「소비자피해보상 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구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, 기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「숲속의집」 사용료를 비수기에는 30% 할인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, 「숲속의집 및 오토캠프장」의 사용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의 면제 사항을 규정 함.
- 또한,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휴양시설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위약금 처리 조항을 두었으며, 자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탁 관리·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음.

- 아울러, 「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와,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」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